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-068 호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 및 「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1년 10월 15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가. 상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신설되고, 표준 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조례 위임사항을 전부 개정하여 수당 지급 조항 신설, 재해보상 규정을 신설하고, 표준안에 맞춰 제목, 순서, 세부내용을 정비·보완하고자 함

(1)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61조 제2항 (제31012호, 2020. 6. 16.) 지역 자율방재단 소집 수당 지급 규정 신설

(2) 「동법 시행규칙」 제27조 3 (2018. 10. 31.)

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에 대한 보상 규정 신설

(3)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참고 조례안 (행정안전부)

2. 주요내용

가. 소집 수당 근거 신설 (안 제10조)

나.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신설 (안 제15조~제18조)

다. 표준안에 따른 제명, 조제목, 순서, 세부내용 정비·보완

(제명, 안 제1조, 안 제4조~제11조, 제13조~제16조, 제21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 출 처 : 서울특별시 중구청 생활안전담당관

나. 연 락 처 : 전화 02-3396-4485, 팩스 02-3396-9085

다. 전자우편 : aser0411@junggu.seoul.kr

라. 주　　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(중구청 생활안전담당관)

마. 기재사항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

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, 제61조, 제62조, 제65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) ①「자연재해대책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(이하 "방재단"이라 한다)에 단장 1명, 부단장 1명, 간사 1명을 둔다.

②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방재단의 단장(이하 "단장"이라 한다)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.

③방재단의 부단장("이하 "부단장"이라 한다)과 간사(이하 "간사"라 한다)는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.

④방재단의 단원(이하 "단원"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 중구(이하 "구"라 한다)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단원이 될 수 있다.

⑤단원이 되려는 개인·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⑥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신청자가 방재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.

제3조(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) ①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은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(이하 "동 방재단"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단장 등의 직무) ①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,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,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간사는 방재단의 회의기록,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며, 회계를 담당한다.

제5조(임원 등의 임기) ①단장, 부단장, 간사,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이 가능하다.

②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해임 및 해촉)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.

1. 사망,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
2.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
3.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
4.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

②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(解囑) 할 수 있다.

1.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(所在)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
2.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(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)
3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4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7조(방재단의 임무) ①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
2.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
3.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4.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
5.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
6.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
7. 재해복구
8. 감염병 예방 및 방역지원
9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 (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

②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
③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(班)을 나누고,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할 수 있다.

제8조(방재단의 운영) ①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작성해야 한다.

③단장은 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정리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구청장은 제출된 별지 제4호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
제9조(지역자율방재 협의회) ①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.

④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부단장
2. 동 방재단 대표
3.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
   가. 방재 전문가
   나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⑤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⑥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.

제10조(소집 등) ①영 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폭기(앰프 등)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.

②영 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.

③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,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

④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11조(교육 및 훈련) ①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,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1. 교육
   가. 단장 : 연 4시간 이상
   나. 단원 : 연 2시간 이상
2. 훈련 : 연 4시간 이상

②단원이 방재활동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「민방위교육 추진지침」에 따른다.

제12조(자문) ①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방재단의 활동 지원) ①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제2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(운임, 숙박비, 식비, 일비 등을 말하며, 그 범위는 「공무원 여비 조례」를 준용한다)
2.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
3.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
4. 단원의 교육·훈련비
5.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
③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.

④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14조(출입증)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.

제15조(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) ①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」 별표 4 비고 제6호에 따른 보상금(이하 "재해보상금"이라 한다)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.

②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단,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.

1. 요양보상: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
2. 장해보상: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
3.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: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

③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

1. 요양보상: 의사진단서, 진료영수증, 진료명세서,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
2. 장해보상: 의사진단서, 진료영수증, 진료명세서, 장해증명서류,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
3.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: 사고발생 경위서, 사고발생 증명서류,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(장제보상만 해당한다)

제16조(유족의 우선순위 등) ①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「민법」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.

②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.

제17조(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) ① 구청장은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은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,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.

1.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: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
2.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: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

제18조(재해보상금의 환수) 구청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위 촉 장

주 소 :

성 명 :

귀하를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임명합니다.

년 월 일

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

[별지 제2호서식]

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 〈개인〉

등록번호 : _____

<table>
<tr><td>성 명</td><td>○○○(성별)</td><td>연 령</td><td></td><td>혈액형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주 소</td><td colspan="3" rowspan="2"></td><td>일반전화</td><td></td></tr>
<tr><td>휴대전화</td><td></td></tr>
<tr><td>자 격 증
또는 기능</td><td></td><td>운전가능여부
(면허종류)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재 난
현장경험</td><td colspan="5">※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
예) ○○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, 이재민 구호, 차량통제, 인명구조, 장비지원 .등 구체적으로 정리</td></tr>
<tr><td>희 망
활동내용</td><td colspan="5">※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</td></tr>
<tr><td colspan="6">[특이사항]

※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</td></tr>
</table>

「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5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가입희망자 ○ ○ ○(인)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

[별지 제2호서식]

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 〈단체〉

등록번호 :

단 체 명		대 표 자	○ ○ ○ (휴대전화)	
주 소			대표전화	
담 당 자	○ ○ ○ (휴대전화)	부서명		
인 원	남 ○○명	여 ○○명	총인원	○○명
장 비	장비명(규격) ○○대	장비명(규격) ○○대	장비명(규격) ○○대	장비명(규격) ○○대
지원가능	남 ○○명 여 ○○명	장비(규격) ○○대	장비(규격) ○○대	장비(규격) ○○대
전문분야	※ 단체의 성격 정리 예) 인명구조, 이재민 구호, 장비지원, 차량지원.. 등 구체적으로 정리,			
활동희망분야	※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			
[첨부서류] (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)				

「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5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대 표 ○ ○ ○(인)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

[붙임]

가입희망 회원명부

[단체명]

연번	성 명	성별	연령	자 격 증 및 기능	운전가능 여 부	혈액형	비 고
1							
2							
3							
4							
⋮							

[별지 제3호서식]

활동확인서

성 명		(인)	등록번호	※ 서식2의 등록번호
활동내용	사 유	※ ○○태풍, ○○지역 집중호우, ○○지역 설해 등		
	방 법	※ 인력,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		
	시 간	○○○○년○○월○○일 부터 ～ ○○○○년○○월○○일 까지 (○○시간)		
	장 소	※ ○○읍·면·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		
	내 용	※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) ○○지역 사전예찰 00시간, ○○마을 차량통제, 00시간 ○○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		
[건의사항] ※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				
확인자 직위 ○○동 대표 성 명 (인)				

「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8조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

※ 확인자는 읍면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

[별지 제4호서식]

단원 활동현황 총괄표

등록 번호	성 명	활 동 상 황		비 고
		횟 수	시 간	
1				
2				
3				
⋮				

1. 등록번호란 ~을 말합니다.
2. 횟수,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합니다.
3.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혼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합니다.
4.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합니다.

[별지 제5호서식]

활동계획서

[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]

월별	주 요 내 용	비 고
1	○ ○	
2	○ ○	
3	○ ○	
4	○ ○	
5	○ ○	
6	○ ○	
7	○ ○	
8	○ ○	
9	○ ○	
10	○ ○	

※ 세부사항은 별도로 붙일 수 있습니다.

[별지 제6호서식]

출 입 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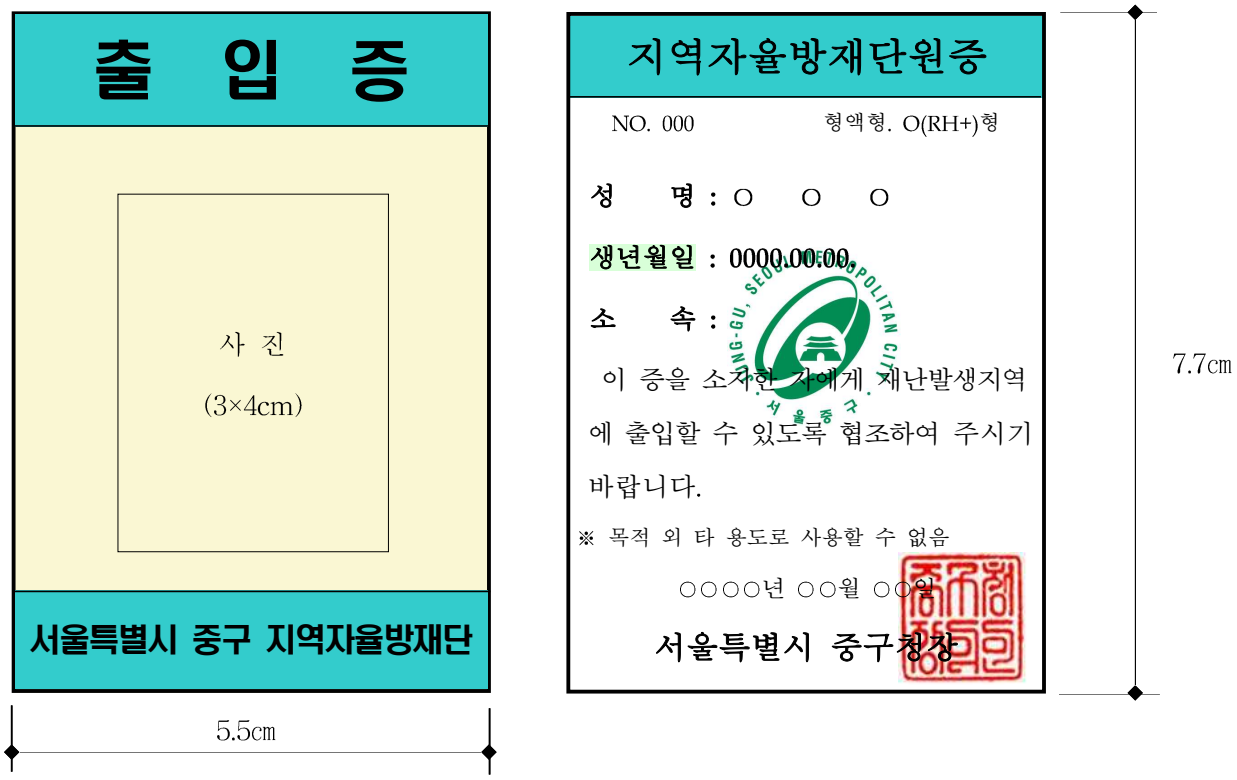
출 입 증
사 진
(3×4cm)
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
5.5㎝
지역자율방재단원증
NO. 000
형액형. O(RH+)형
성 명 : O O O
생년월일 : 0000.00.00
소 속 :
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○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7.7㎝

[별지 제7호서식]

요양〔 〕, 장해〔 〕, 장제〔 〕, 유족〔 〕 재해보상청구서

※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앞쪽)

※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기간 30일
사고자	소속		전화번호
	주소		
	성명	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
청구인	주소		전화번호
	성명	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
	사고자와관계		
사고경위 및 요양	사고(사망)일시		
	사고(사망)장소		
	사고경위 1. 화재【 】 2. 구조【 】 3. 구급【 】 4. 기타【 】		
	요양(진단)병원		요양(진단)부위
	요양(진단)결과		요양기간
청구금액	요양보상		장해보상
	장제보상		유족보상
	청구금액		

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」 제27조의3 및 「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 : (서명 또는 인)

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.

년 월 일

단장 : (서명 또는 인)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(뒤쪽)

제출서류	1. 요양보상(①,③,④,⑦,⑧), 2. 장해보상(①,②,③,④,⑦,⑧) 3. 장제보상(③,④,⑤,⑥,⑦,⑧), 4. 유족보상(③,④,⑤,⑦,⑧) ① 의사진단서, 진료영수증, 진료명세서 각 1부. ② 장해증명서류 1부.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.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(사고발생 보고서, 목격자 진술서 등) 1부. ⑤ 사망진단서(사망증명 서류) 1부.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. ⑦ 통장사본 1부.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(필요시) 1부.	수수료 없 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요양·장해보상: 주민등록표 등본,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·유족보상: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, 인감증명서, 입금계좌확인정보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가 가려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청인	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 담당부서
신 청 →	경 유 (자율방재단장) ↓ 접 수 (재난관리 담당과) ↓ 심 의 (지역자율방재 협의회) ↓ 건 의 (재난관리 담당부서장) ↓ 확 정 (서울특별시 중구청장)
← 지 급	